

2 산소호흡기의 제거와 인간의 존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0조

Case

김존엄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고 있다. 할머니의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꽤 오랜 세월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셨는데, 당시 할머니의 마음고생이 매우 컸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평소 자녀들에게 할아버지와 같은 상황이 되면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도록 해달라고 당부해왔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는 노환으로 입원하였고, 상태가 점점 나빠져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게 되었다. 더 이상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 이르자 가족들은 할머니의 평소 당부에 따라 의사에게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의사 역시 할머니와 가족들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였지만,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산소호흡기를 떼어내 할머니가 사망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할머니의 뜻과는 반대로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상태가 이어졌다.

가족들은 할머니와 가족들의 진지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죽음을 맞이 못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해친다고 생각하고, 병원은 반대로 죽음에 임박한 환자라고 하여 생명연장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인간 존엄의 의미와 그 내용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이성에 기초하여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며,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 가는 이성적 존재이다. 따라서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며, 그 자체로 도구가 아닌 목적이다. 사람을 목적이 아닌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난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에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대리모역할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여성의 신체 일부인 자궁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분명히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난다. 또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철야수사를 하는 것도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사의 수단으로 다루는 것이므로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다.

법률 용어

대리모 출산 : 여성의 자궁 때문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남편의 건강한 정자와 부인의 건강한 난자를 제외해서 수정시킨 수정란을 건강한 자궁을 가진 여성에게 이식하여 출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자신의 자궁을 출산을 위해 빌려주는 여성을 대리모라고 한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

사람은 누구나 온전한 이성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세상에 태어난다. 인종이나 성별, 종교나 신분을 떠나 사람은 인격체로서 모두 같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인종이나 성별 등에 의해서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 왔다. 미국의 노예제도가 그랬고, 조선 시대의 남존여비 사상이 그랬다. 그래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잘못된 행동이다.

범죄자나 정신병자의 처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형벌을 집행하는 교도소나 정신병자를 수용하는 의료시설에서도 범죄자와 환자를 사회복귀나 치료목적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즉, 수형자의 사회복귀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형벌이 가해지거나, 정신병 환자의 치료가 아니라 가족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환자를 의료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것 역시 인간

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이다. 이런 맥락에서 범죄자의 사회복귀보다는 범죄예방과 사회안전을 위해 범죄자를 영구히 사회에서 추방하는 형벌인 사형은 본질적으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평등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므로 인간의 생명은 존엄성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생명은 존엄성의 전제가 된다. 생명권을 헌법에서 따로 기본권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을 긍정한다면 생명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거나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 등으로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존엄하게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김존엄 할머니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를 ‘존엄사’라고 한다.



원형 감옥

수형자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고안된 원형 감옥 개념이 적용된 ‘프레시디오 모델로’ 감옥(쿠바)의 내부. 감옥은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Doug Dubois & Jim Goldberg / Magnum Photos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인간의 존엄은 생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김 존엄 할머니처럼 의식이 뚜렷했을 때 미리 생명연장을 위한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도록 당부하였고, 의학적으로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객관적 진단이 내려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중단하였다면, 인간의 존엄이 훼손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죽음의 과정에서 본인의 확고한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다른 사람의 치료를 위한 장기적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메피스토-클라우스 만(Mephisto-Klaus Mann) 판결 1971년

독일에서 반나치 활동을 하던 작가인 클라우스 만은 1933년 나치가 집권하자 외국으로 망명하였다. 망명 중에 나치 정권 하에서 출세가도를 달리던 배우 구스타프 그윈트겐스를 모델로 삼아 소설을 집필하였는데, 그 작품이 바로 『메피스토』이다. 이 작품에서 클라우스 만은 권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치에 동조하는 주인공 헨드릭 회프겐을 특유의 풍자 기법과 냉소적인 표현으로 묘사함으로써 그윈트겐스를 비판하였다. 이 소설은 독일 이외의 지역에서 출간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는데, 1963년 독일의 출판사가 이를 출간하려고 하자 그윈트겐스의 상속인이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여 독일 내에서 출판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소설이 죽은 그윈트겐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허구의 소설이라고는 하지만, 당시 예술계에 종사한 사람이라면 주인공 회프겐이 그윈트겐스라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윈트겐스가 아무리 죽은 사람이더라도 이 정도면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출판금지시키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죽은 사람과 인간의 존엄

때로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존엄성이 논의되는 경우도 있다. 인간의 존엄이 생명을 전제로 하지만 죽음과 함께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사람이 죽은 후에도 계속 남아 있다.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는 생명이나 신체뿐 아니라, 인격체로서 사람이 가지는 명예나 다



2009년 연명치료를 중단한 김할머니. 존엄사를 허용한 첫번째 판결.

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사생활도 보호한다. 사람이 죽었어도 그의 인격에 관한 기억과 평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볼 문제

존엄사가 범제화될 경우를 생각해 보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 있을까?

법률용어

안락사 : 의사가 환자의 고통과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의료적인 방법으로 단축시키거나 연장시키지 않는 것을 '안락사'라고 한다. 안락사에는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중단함으로써 생명을 단축하는 '소극적 안락사'가 있다.

소극적 안락사 : 소극적 안락사는 산소호흡기와 같은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에게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존엄사 : 존엄사는 죽음에 직면하여 환자 스스로 죽음의 과정을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의미로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한다.